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6. 15.  
관광건설위원장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6월 9일 충청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99. 6. 15)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

### 가. 제안이유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시행되면서 같은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방법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적용범위는 대중교통지원사업에 한정함(안 제3조)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안 제4조)
- 대중교통지원사업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안 제5조)
- 운행결손 보상방법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신 익 수 )

충청북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대중교통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시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대중교통 지원사업 재원구분(안 제4조)

둘째, 보조대상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용자대상 사업의 처리 및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재원부담 명시(안 제5조)

셋째, 보조사업 및 용자사업의 결정(안 제7조)

넷째,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지원(안 제8조)

다섯째,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내용 명시(안 제12조)

여섯째, 대중교통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의 차입 등 기타 본 조  
례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중교통 문화발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됨.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용자대상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따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시·군간 용자기준이 상이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붙임 서류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